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3

발의연월일: 2020. 7. 9.

발 의 자:서동용・홍정민・김철민

유정주 • 이형석 • 김승남

박홍근 • 조오섭 • 김정호

신정훈 • 야전비) • 김병욱

권인숙 · 고영인 · 양양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기관, 각급 학교,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 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대학 교수, 조교·강사, 직원이 연루된 성희롱과 성추행, 성폭력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, 일부 교수들은 수업 중 성차별,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일부 대학생들이 SNS,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등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, 20 19년 고등교육기관의 폭력예방 교육 현황을 보면 대학생의 교육 참여 율은 42.7%로 중학생(98.4%)과 고등학생(96.6%)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고, 대학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도 국가·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여전 히 낮아,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.

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학교의 장"을 "학교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"으로, "공공단체의 장"을 "공공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국가기관등의 장" 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및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6항"을 각각 "제7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본문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-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, 전보,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- 5.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・인증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--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 장,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 -----학교의 장. 「고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의 장----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 -----공공단체의 장(이하 이 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조에서 "국가기관등의 장"이라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 한다)-----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 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 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<신 설>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 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

③ ~ ⑥ (생 략)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⑨ 여성가족부장관은 <u>제6항</u>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사양을 소곡 직원 및 중사사에
대한 승진, 전보, 교육훈련 등
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$\underline{4}$ \sim $\underline{7}$ (현행 제3항부터 제6
항까지와 같음)
<u>⑧</u> <u>제7항</u>
<u>⑨</u> <u>제7항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
2항에 따른 학교 평가 · 인증
<u>⑩</u> <u>제7항</u>

<u>①</u>·<u>①</u>(생 략) <u>①</u>(현행 제10항 및 제11 항과 같음)